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추은희 의원 외 15명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은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추은희·김근한·김영태·김재우
김정도·박교상·박세채·신용하
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
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16명)

1.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적용대상,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안 제4조~제7조)
- 다.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안 제8조)
- 라.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9조~제14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5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미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미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필요한 인력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

5.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결과를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미시의회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재난 또는 노동 관련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 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⑦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타지자체 예산편성액 참조
-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위원회 위원 : 10명 (위원장 : 시장 포함)
- 실태조사 : 전문기관이나 단체 연구용역 의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출	실태조사 용역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위원 수당	630	630	630	630	630	3,150
	소계	30,630	30,630	30,630	30,630	30,630	153,51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시 비		30,630	30,630	30,630	30,630	30,630	153,510
기 타							
합 계		30,630	30,630	30,630	30,630	30,630	153,510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사정에 따라 재정수반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노동복지과 노사정책팀 행정8급 이준섭(054-480-620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실태조사 용역

30,000,000원*1식=30,000천원

- 위원회 위원 수당

70,000원*9식=630천원